

제52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 (서면회의)

1. 회의일시 : 2012. 9. 14.(금)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

3. 참석위원 : 이계철 위 원 장

홍성규 부위원장

김충식 상임위원

신용섭 상임위원

양문석 상임위원 (5인)

4. 불참위원 : 없음

5. 회의내용

① 서면회의 사유

- 의결 가 ~ 의결 다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 (서면결의)제1항제1호에 따른 제2009-30차 전원회의('09.7.9), 제2011-17차 전원회의('11.3.21), 제2011-67차 전원회의('11.11.30)에서 의결한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일상적·반복적 안건 또는 경미한 안건'에 해당됨
- 보고 가 : 「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14조의1(서면보고) 제1항에 따른 '토론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'의 안건에 해당됨

② 의결사항

가.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건 - (주)현대미디어 등 6개사 - (2012-52(서)-198)

- 「방송법」 제9조제5항 및 제15조제1항에 의거, (주)현대미디어 등 5개의 방송채널 사용사업 등록 및 (주)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의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신청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< 방송채널사용사업 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유형	방송분야	대표자	최다액출자자(지분율)	납입자본금(실질자본금)
(주)현대미디어	드라마엔(Drama N)	TV	드라마	김성일	(주)현대에이치씨엔(100%)	25.5억원 (87.7억원)
디에스아이비미디어(주)	히어로 액션(Hero Action)	TV	영화	김호정	김영섭(40%)	5.5억원 (5.0억원)
(주)에스에스증권방송	SS 증권방송(SSstockTV)	TV	증권정보	심기창	(주)이지서티(52%)	6.7억원 (6.4억원)
(주)에프티엔한국외식산업방송	에프티엔(FTN)	TV	식품 및 외식산업정보	정용석	채제세(40%)	5.0억원 (5.0억원)
에이스텔(주)	엑스게임(X-Game)	데이터	게임	이강현	이강현(26.1%)	14.6억원 (5.0억원)

< 방송채널사용사업 변경등록 내용 >

신청법인	채널명	방송유형	변경사항 : 방송분야	
			변경 전	변경 후
(주)에이클라엔터테인먼트	스포티비 플러스(SPOTV+)	TV	스포츠	스포츠 및 보조적 데이터방송

나. 기간통신사업(초고속인터넷)의 양수 인가에 관한 건 - (주)무진이엔엠의 (주)설성방송 초고속인터넷 사업 양수 - (2012-52(서)-199)

- 「전기통신사업법」 제18조제1항에 의거, (주)무진이엔엠이 신청한 (주)설성방송의 초고속인터넷 사업 양수인가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인가하기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사업양수 법인 : (주)무진이엔엠(대표: 지경호)

주요사업(예정)	사업권역	주요주주(5% 이상)	경영현황('11년)		
		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·초고속인터넷 ·영상(광고) 제작	충북 음성군	·지경호 100%	5백만원	'11. 7. 20. 설립	

② 사업양도 법인 : (주)설성방송(대표: 지성운)

주요사업	사업권역	주요주주(5% 이상)	경영현황('11년)		
			자본금	매출액	영업이익
전송망사업(12.0천명) 초고속인터넷(1.3천명)	충북 음성군	지성운 40% ·황지흠 20% ·진옥순 18% ·지광운 10% ·이복희 10%	10.6억원	11.6억원 (통신 3.2억원)	0.2억원

※ 전송망 사업 : 씨씨에스충북방송(종합유선방송사업자)의 충북 음성군 가입자에게 방송프로그램을 전송

다. 「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회계정리 기준」(고시) 제정안에 관한 건

- (2012-52(서)-200)

- 「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(‘12. 5. 23. 시행)」에서 위임한 광고판매대행사업의 회계정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고시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함

○ 주요 내용

① 총칙(안 제1조 ~ 제6조)

- 본 회계기준의 목적, 적용대상 및 회계정리 방법 등 기본원칙 규정
- 광고판매대행사업자가 제출할 영업보고서의 종류를 재무상태표, 손익계산서 및 부속명세서 등으로 정함
-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·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토록 규정

② 재무제표(안 제7조 ~ 제10조)

- 방송광고판매대행자의 자산, 수익 및 비용 등을 나타내는 재무제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 표시하며, 회계분리는 직접할당을 원칙으로 하되 공통자산, 공통수익 및 공통비용의 경우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구분하고 그 배부기준 제시
- 방송광고판매대행자는 결합판매의 경우 주요 지상파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매출액과 지원대상방송사업자의 방송광고 매출액을 각각 구분 표시

③ 재무상태표(안 제11조 ~ 제13조)

- 모든 자산과 부채는 유동·비유동으로 구분하되 임의적으로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도록 하며, 주요 자산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

④ 손익계산서(안 제14조 ~ 제16조)

- 모든 수익 및 비용은 임의적으로 상계하지 않으며, 주요 손익계정은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과 그 외 사업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

- 방송광고대행사업 매출액은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방송사로부터 광고 위탁의 대가로 지급받은 방송광고의 수탁수수료로 규정하며, 매출원가는 방송광고판매대행자가 광고대행자에게 지급한 광고대행수수료로 규정함

⑤ 기타 사항(안 제17조 ~ 제34조)

- (부속명세서) 방송광고매출액, 수탁수수료 및 광고대행수수료 등 명세서는 방송사별, 매체별 및 광고유형별 등으로 구분하여 기술토록 함
- (영업보고서 제출 및 회계자료 관리) 본 고시에 따른 영업보고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제출하며 관련 회계자료를 5년간 자체 보관토록 규정

○ 위원회 보고후 변경사항 : 자체규제심사 결과 및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

- (자체규제심사) 분기별 수탁수수료명세서 제출(제29조)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령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분기별 자료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권고를 수용
- (이해관계자) 미디어랩사에서 요청한 사업자의 영업 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에서 영업보고서를 공개한다는 근거규정을 추가 반영

○ 향후 일정

- '12. 9월중순 : 고시 제정안 관보 게재 및 시행

③ 보고사항

가. 「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」 등 (고시)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

- 일몰기한 연장 및 금지행위 위반행위에 대한 공표기준 완화 등을 위한 관련고시('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', '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세부기준', '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') 개정안을 보고 받고 원안대로 접수함

○ 주요 내용

①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기준(고시)

- 금지행위 위반사실에 대한 사업장·대리점 공표 시 공표크기를 전지규격(78.8cm×109cm)에서 A2사이즈(42cm×59.4cm)로 완화함

②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(고시)

(1) 결합상품 가입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

- 허위·과장 등 광고를 통한 이용자 유치행위 금지

- 계약 체결 시 할인율과 위약금 등 중요 사항에 대한 설명의무 및 계약서 교부의무
- 서비스 개시 전 이용자의 청약 철회권 인정

(2) 결합상품 이용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

- 이용 중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하거나 계약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함
- 계약 시 약속한 서비스 품질기준 유지 의무

(3) 결합상품 해지단계에 있어 사업자의 금지행위

- 이사 등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결합상품의 일부 서비스 이용 불능 시 결합상품 전부에 대한 계약해지 인정
- 이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일부서비스 이용 불능 시 이용자가 나머지 서비스의 계속 이용을 원하는 경우 기존 할인율을 받을 수 있도록 함
-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제한하거나, 해지요구를 받고서도 이를 지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
- 이용자의 귀책유무를 불구하고 계약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경품에 대한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리를 강화함
- 중요사항을 설명하였는지 등에 대한 입증책임을 사업자에게 지움으로써 특히 분쟁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함

③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(고시)

-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 위반관련 부과기준율을 사업자간 공정경쟁 위반 관련 부과기준율과 동일하게 통일시킴

o 추진계획

- 행정예고 : '12. 9월 중
- 규제개혁위원회 규제개혁 심사 : '12. 10월 중
- 위원회 의결 : '12. 10월 중